

국가연구개발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미국 · 일본 · 한국의 대학연구비 중앙관리사례 비교를 통한
적용 가능성의 탐색 -

김종호 · 김세훈 · 황필선

경희대 행정학과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중앙일보 이코노미스트연구원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연구를 통한 평가체계 및 지표 |
| II. 연구비 중앙관리의 이해와 평가지표 | V. 결론 및 시사점 |
| 산출모형의 정립 | 참고문헌 |
| III.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및 선행 평가체계 | Abstract |
| 분석 | |

Key words(중심용어): 대학연구비(Universities' Research Fund), 관리체계(Management System),
평가지표(Evaluation Indicator), 평가모형(Evaluation Model),
연구비중앙관리(Centralized Management of Research Fund)

국 문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로서, 선행된 관련 연구의 내용과 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해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평가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접근방법으로는 첫째, 미국과 일본의 유사 연구 및 평가체제에서 제시된 지표에 대해 타당성·객관성·정량성·적용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 평가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둘째, 학술진흥재단에서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평가체계를 연도 별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집단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모형의 개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실무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모형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 “본 연구는 2007년도 경희대학교 교비연구지원에 의한 결과임.”(KHU-20070613)

I. 서론

국가의 경쟁력은 지식 창출과 확산을 통한 가치창출에 활용하는 능력에 달려 있다. 대학은 이러한 지식기반경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사람·지식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동시에 창출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대학의 지식창출능력을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중요한 활동 중의 하나가 대학의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투자지원 활동이다.

최근 정부의 대학연구비 지원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확대되고 있다. 대학은 정부로부터 지원 받은 연구비를 전문적인 기관에 의해 투명성·효율성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고 연구자를 지원할 책임을 가지게 된다. 대학에 대한 투자비용이 늘어나고, 이의 투명한 관리에 대한 외부 지원자들의 관심이 높아감에 따라, 대학은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학과 함께 정부연구개발사업의 수행주체로서 중요한 축을 형성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실질적으로 투명성 개선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사를 통해 정부로부터 직접적인 관리를 받고 있으며,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등을 통해 외부에 대한 보고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그리고 연구기관 내부에서의 내부통제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어 연구비 사용에 대한 내부적인 통제 메카니즘도 상당한 수준으로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학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부 통제 메카니즘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연구비 관리에 대한 내부 통제 메카니즘의 구조 및 운영수준도 외부지원자의 전적인 신뢰를 얻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 및 효율성에 대한 의문을 해소하고, 연구자에게는 회계관리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연구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킬 목적으로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의 평가방안을 구성하여 각 대학에서의 실태조사에 적용할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대학의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평가를 위한 모형 개발 연구로서, 선행된 관련 연구의 내용과 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평가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접근방법은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미국과 일본의 유사 연구 및 평가체제에서 제시된 지표에 대해 타당성·객관성·정량성·적용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 평가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 간 인력 및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적용이 난해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사례와 비교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결과와 평가체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둘째, 학술진흥재단에서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평가체제를 연도별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집단을 통해 타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평가모형의 개편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셋째,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실무자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평가모형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Ⅱ. 연구비 중앙관리의 이해와 평가지표 산출모형의 정립

1. 연구비 중앙관리의 이해

가. 연구비 중앙관리의 개념

연구비 중앙관리란 일정한 단위 연구기관에서 그 구성원들이 수행하는 제반 연구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고 집행하는 절차를 일정한 전담기구가 구성원 개개인을 대신해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구비 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따라서 연구비 중앙관리란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연구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연구비 입금에서부터 최종 지출까지의 과정에서 법령이나 자체 규칙에 따라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회계감사나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언제든지 관련 자료를 제시할 수 있도록 연구비 집행내용을 일정한 서식에 관련 증빙서과 함께 기록·비치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가장 바람직한 연구비 관리는 연구책임자가 일체의 금전적 관리 부담 없이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지원행위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연구비 중앙관리의 의의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는 교수들의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투명성을 보장하여 대학의 연구여건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보다 구체적인 의의는 아래의 각 사항에서 찾아볼 수 있다.

첫째, 연구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전담기구의 공식적인 회계관리를 통하여 연구수행자의 연구비 관리에 대한 심리적 부담과 연구비의 회계적 관리업무를 경감시켜 줌으로써 연구수행자로 하여금 연구에 전념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연구비 집행의 신속성과 융통성을 제고할 수 있다.

둘째, 연구비의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즉 교수가 직접 연구비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을 통해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는 제도 하에서 집행함으로써 외부기관으로부터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대외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셋째, 연구행정 능률화 및 운영의 합리화에 기여한다. 모든 연구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대학이나 학과에서 '연구처' 운영을 개별적으로 취급하기 보다는 중앙관리를 통한 행정력 지원으로 연구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연구비 운영의 합리화를 통한 연구비의 효율적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

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평가 도입의 필요성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대학에 도입된 것은 1980년대 후반의 일로 본격적으로는 1987년 서울대학교에 연구처가 출범하면서부터이다. 이후 1988년에는 연세대학교와 아주대학교, 1991년에는 포

항공과대학교가 대학본부에 연구처를 신설하였다.

이와 같이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나름대로 짧지 않은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관리의 투명성과 연구의 효율성 확보를 통해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있는 제도이다. 하지만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아직까지 완전하게 정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평가(유현숙 2002; 박상대·정일환 1998)가 존재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차원의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정부 차원의 관리체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학의 연구비 관리체제가 가진 문제점이 그것이다.

1) 정부 차원의 관리체제의 문제점

우리나라 대학의 연구경쟁력 저조는 연구에 투자되는 재정이 취약하다는데 그 일차적인 원인이 있다. 대학에 투자되는 연구비의 재원별 비중을 비교하면, 199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56%가 정부 지원인데 반해, 미국의 경우는 71%가 정부지원이다(유현숙 2002, 42). 우리나라 정부의 대학 연구비 지원규모가 작다는 것도 문제이지만, 연구비 지원이 합리적인 기준과 절차 및 논리로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신뢰할 수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정부의 연구지원 체제의 문제점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첫째, 정부 부처에서는 다양한 명목으로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연구 성과를 면밀히 살펴 비용-효과 분석에 근거한 재배분과 재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물론 개별 연구과제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그 결과가 후속 연구지원을 위해 충분히 피드백(feed back)되고 있지 못하다.

둘째, 정부 부처 간 중복된 투자, 산만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간 대학 연구비 지원은 몇몇 부처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산업구조의 분화와 고도화에 따라 이제는 그 관련 부처가 확대되었다. 예컨대 그 동안 과학기술부만이 과학기술관련 연구를 지원하던 체제에서 이제는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정부의 여러 부처들이 연구비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인문사회분야의 경우는 교육인적자원부가 주로 지원하고 있다¹⁾. 문제는 정부의 연구비지원 사업이 이렇게 복잡화되면서 부처 간 중복지원의 문제가 발생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정책결정에 의해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학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 지원이 부족하다. 대학별로 연구의 비중과 가치는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유형별로 연구중심대학과 비연구중심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등 연구의 목적 가치에 따라 대학 연구비 지원은 차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현재 정부의 연구비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대학 연구비 지원은 소수 정예의 세계적인 경쟁력을 지닌 대학을 육성한다는 목표와 연구 인력의 저변 확대·기회균등 정책 등이 혼재된 상태이다.

1) 2008년 2월 25일 제17대 대통령 취임에 따라 법령 8852호(동년 2월 29일)로 정부조직이 개편된 바 있다. 그러나 부처 수준의 조직별 통폐합은 추진되고 있으나 아직 과거 부처에서 수행되던 사업별(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각종 지원사업 등) 통폐합은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를 수행하고 있던 과거 부처의 조직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넷째, 학문과 전공영역별 특성을 반영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문·사회계와 이·공계는 연구 수행을 위하여 뒷받침되어야 할 물질·인적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간접비 비중을 같게 적용하고 있는 경우가 그 예이다. 전공영역별로 최적의 연구비 지원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 계열별로 볼 때 이·공학계의 연구대학들이 보다 많은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그 지원액은 교수당 SCI실적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다(유현숙 2002, 42).

2) 대학에서의 관리체제의 문제점

대학에서의 연구 관리체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 중 하나는, 연구를 위한 별도의 회계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는 대학의 연구활동이 그저 교육의 기능에 부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뿐, 대학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로 생각하지 않았던 때문이기도 하다. 대학측에서도 연구 활동을 대학이 주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기능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연구지원이나 교수의 연구활동 인건비 지급 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둘째로는 중앙관리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하다는 점이 지적된다. 연구비 중앙관리제는 대학교수들이 원시적인 방식으로 연구비를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리고 대학이 연구지원 업무를 대행하여 교수의 연구 이외 활동의 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본래의 취지를 살려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 교수는 여전히 연구자 개인이 연구비 관리를 위해 해야 할 일이 많다고 인식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행정직원의 경우는 교수들의 일을 대신 하라고 인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수들은 연구비 중앙관리제가 오히려 연구 수행과정에서 복잡함을 유발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셋째, 원가에 의한 연구비 산출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다. 직접비와 간접비 모두 원가계산 방식에 의해 그 규모가 산출되지 못하고 있다. 간접비의 경우 직접연구비의 일정 비율로 추가하여 산정하기보다는 전체 연구비의 일정 비율로 산정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 결과 간접연구비는 직접연구비와는 별도로 지급되는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고, 연구비 총액에서 공제되는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다. 간접비가 이렇게 총 연구비에서 공제되는 마이너스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는 자신이 직접 사용하는 연구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하여, 간접비 징수 자체에 저항감을 표출하게 되고 지원기관으로서도 간접비가 연구와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또한 연구비 정산 시 당초의 연구비 예산에 간접연구비가 제대로 계상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할 수 밖에 없는 어려움을 수반한다.

2.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지표 산출 모형 : 접근방법과 구성체계

앞서 논의되었던 정부 및 대학 차원에서 발생될 수 있는 관리체계의 문제점들은, 연구현장에서는 이미 상당한 시간 동안 심각성이 인식되어 오고 있지만, 개선의 방향을 연구하였거나 제도화 된 경우는 전무(全無)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는 인식의 차이와 역할의 혼란에서 온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대학에서 교수의 연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비 중앙관리제를 도입해야 한다면, 이를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의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에 대해서 정부측은 대학의 주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대학에서는 정부의 제도적 지침이 필요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현재 연구비 중앙관리체제의 정착이 미진한 것은 아직 정부차원의 통일된 지침 보다는 대학의 자율적인 관리체제에 의존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정부차원에서는 대학의 특성에 기반한 차별성 있고, 사회적 환경에 적합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대학이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수용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내용과 지표를 분석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 평가모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 수행을 위해 대학의 연구비와 중앙관리는 다음과 같이 범위를 제한하여 정의하고, 연구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은 국내 소재 4년제 이상 대학교로 제한하고자 한다. 만약 대학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다면 4년제 이상(의과계열 등)대학교와 3년·2년제 전문대학, 그리고 전문학사 학위가 수여되는 2년제 전문학교와 같이 특징 있는 평가대상들이 혼합되어 형평성 있는 평가 수행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

둘째, 대학의 연구비는 과제형 수탁 연구용역비로 제한하고자 한다. 대학의 연구비는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와 수탁 연구용역의 형태로 수행하는 연구비가 있다. 이때 수탁 연구용역의 연구비도 과제형 연구용역연구비와 장학금 형태의 연구비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먼저 월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연구보조비는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한다. 과제형 연구용역비는 대학·연구자(교수, 연구원)·용역발주기관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하여 연구자는 연구결과를 제출하고, 용역발주기관은 연구비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2004년부터는 해당 대학의 산학협력단²⁾이라는 법인 및 연구자와 용역발주기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한편 장학금 형태의 연구비는 BK21, NURI 등의 형태로 대학연구자의 연구비라기보다는 학생 장학금 형태의 연구비를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형태의 연구비는 대학교수·연구원 등이 수행하는 용역연구비와는 성격상 엄격히 차별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것을 연구의 범위에서 제외시킨다.

셋째,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는 일정한 전담기구가 연구자를 대신하여 연구에 필요한 제반 경비의 조달과 집행절차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제를 의미한다. 이는 회계관리에서는 연구비 입금에서부터 최종 지출까지의 과정을 법령이나 자체규칙에 따라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하고, 연구지원에서는 연구계획서 작성부터 연구결과물과 관련 기자재의 사후관리에까지 적극적인 지원이 수행됨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의하에서 이루어진 연구의 접근방법은 다음 3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39조에 의하여 설립되는 특수법인이다.

첫째, 학술진흥재단에서 기존에 수행되어 왔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평가체계를 연도별로 검토하여 수정 및 보완사항에 대해 전문가회의(2006. 12. 16; 2007. 1. 3; 2007. 1. 15)를 실시한 후 평가모형의 개관을 형성하고자 하였다.

둘째, 국내외 유사 연구 및 평가체제에서 제시된 지표에 대해 타당성·객관성·정량성·적용가능성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본 평가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제인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는 현실적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학간 인력 및 재정 규모 등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적용이 난해한 과제 중 하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된 선행연구결과와 평가체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하여 보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로 기대되는 사항만을 선별하여 본 연구에서의 적용가능성을 탐색하였다. 한편 국외의 연구를 검토한 결과는 그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이었다. 사실상 외국의 대학연구비 지원에 있어서는, 정부가 어떠한 절차와 기준으로 연구비를 지급해야 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미국의 대학 연구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OMB Circular A-21」이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나 그 규정 또한 매우 포괄적으로 제시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국외의 연구결과에 대해서는 「OMB Circular A-21」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셋째,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측정기준에 대해서는 대학 실무자 검토의견을 반영³⁾하여 평가모형의 현장 적용가능성을 증가시키고자 하였다.

넷째, 평가지표별 점수배분 방식은 다음의 대분류에 따라 세분화를 수행하였다.

- ①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기구·제도·인력 구비와 운영수준(전담기구 설치, 집행과 감사 등 연구비 관리 규정, 인력 확보와 운영)
- ② 연구비 집행 과정과 관리 수준

이렇게 두 개의 영역은 다수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이들 세부지표에 대한 점수는, 1차적으로 본 연구진이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의 궁극적인 목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한 지표의 순위에 따라 차등배분하였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유사·선행연구에서 배분된 점수체계를 재평가하고, 본 연구에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배분하였다. 그 결과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제도·인력 등 인프라 부문과 실제 연구비 집행과정의 2개 영역으로 대분류하고, 이들을 세분화하여 평가점수를 배분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특히 이들 중 상대적으로 배점이 높게 설정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 ① 연구비 관리 전담기구 설치(30점), 직접비 집행 관련 지표(30~20점)는 실제 연구비 중앙관리하에서 비용지출의 적정성이 확보될 필요가 있으므로 높은 배점이 부여되었다.
- ② 전담기구내의 업무세분화(20점), 연구비 관련 규정 여부(20점),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여부(20점) 등은 위의 ①에서 제시된 지표가 현실적으로 타당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를 담보하는 부분이므로 두 번째로 높은 배점을 부여하였다.

3) e-mail을 통해 2007. 2. 2; 2007. 2. 12; 2007. 2. 13에 걸쳐 시행되었다.

- ③ 정기감사 실시 여부(10점), 중앙관리 인력 현황(10점), 직원1인당 처리 연구비 현황(10점), 세부지침의 매뉴얼화(10점) 등 연구비 중앙관리의 자체검증과 일선에서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지표는 세 번째 순위의 배점을 부여하였으며, 일부는 각각의 세부사항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Ⅲ.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 및 선행 평가체제 분석

1. 미국의 연구비 관리 실태(OMB Circular A-21)⁴⁾

미국 대학의 연구비 관리는 매우 다양한 기관에서 이루어지며, 각기 다른 세부적인 연구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OMB Circular A-21은 가장 일반적인 상황에서의 연구개발, 훈련, 기타 활동 수행을 위해 연방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정부와 계약을 체결할 경우 적용되는 원가원칙을 규정해 놓고 있다. 총원가가 허용된 직접원가와 허용된 간접원가로 구성된다. 여기서 원가의 허용여부(allowability of cost)는 다음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결정된다.

첫째, 합리적이어야 한다.

둘째, 원가 할당은 정부의 지원 협약에 제시된 원칙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셋째, 상황에 적합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GAAP: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을 적용하여 일관되게 처리되어야 한다.

넷째, 원가 항목들의 금액이나 유형에 관해 지원 협약원칙에 제시된 제한조건 또는 예외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대학은 원가할당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보장해야 한다.

첫째, 해당 계약에 부과된 원가가 허용가능하고, 할당가능하며, 합리적이라는 것을 보증할 책임이 있다.

둘째, 내부통제(internal controls), 즉 대학에서 모든 재무거래에 대한 내부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셋째, 효익에 대응하여 원가가 할당되는 직접원가할당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OMB에서는 연구원가를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하고 있다.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하는 결정요소는 사업에 소요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특징이 아니라 사업과의 관련성이다. 지원 협약에 직접 부과되는 비용은 지원 협약을 수행하는 종업원의 급여, 해당 기관이 지속적으로 직접비로 처리해온 Fringe benefit(사업수행을 위해 소비되는 재료비), 시설비 등 지원 협약 수행을 위해 발생하는 기타 지출 항목이다. 즉 직접비(direct costs)는 특정한 지원 프로젝트, 교육 활동 혹은 기

4) <http://www.whitehouse.gov/omb/circulars>

타 기관 활동에 따라 분명하게 구분되는 원가, 혹은 이러한 활동에 아주 정확하고 상대적으로 쉽게 직접 할당되는 원가를 말한다.

그리고 간접비(facilities & administrative costs)는 공통 목적을 위해 발생하거나 특정한 지원 프로젝트, 교육 활동, 혹은 기타 기관 활동에 대해 분명하게 구분될 수 없는 원가라고 정의하고 있다. F&A cost에서 Facilities는 감가상각과 사용 공제비용, 건물, 장비 등의 시설개선을 위한 부채의 이자, 유지관리비용, 도서관 비용을 뜻한다. Administration은 일반관리비, 부문(학과)관리, 지원 프로젝트 준비, 학생 관리와 서비스 등 유형의 비용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일반적인 대학 연구비 관리 규정인 OMB Circular A-21은 대체로 포괄적인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연구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원가를 보장해주는 방식으로 연구비가 지급·관리될 것을 지향하고 있다.

여기서 본 연구가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와 미국의 현실은 매우 다를 수 있음은 인정해야 하지만, 대학에서 스스로 고안하고 운영하는 내부통제 장치가 적절히 준비되어야 함은 공통적으로 인식할 사항이라 하겠다.

둘째, 직접비는 연구인력의 급여, 연구과정의 재료비, 연구시설비 등 연구와 직접관련된 비용의 지출이므로 원가 산출과 평가를 수행할 구체적인 관리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연구 재료비 등에 있어서는, 재료 구매시 원가산정과 구매집행, 검수 등 세분화된 업무절차를 마련하여 엄정한 비용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업무세분화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이다.

셋째, 간접비 지출에 관련된 부분은 특정사항만을 지출허용항목으로 지정할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저촉되는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인 지출규정을 마련하고 적법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간접비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 항목은 매우 다양한 분야에 연결되어 있지만, 실제로 미국의 지원 협약 규정에서는 알콜, 음료비·동창회 활동 및 지원·벌금 지출에 대해서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보면 간접비는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의 자체규정 확립과 준수가 더 중요할 것이라 보인다.

2. 일본의 연구비 관리 실태(NEDO)

일본의 NEDO(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는 대학이 아닌 연구기관으로서 일본의 석유대체에너지 연구의 핵심조직이라 할 수 있다. NEDO는 정부(경제산업성)와 민간기업의 출자나 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대학, 연구조합 등에 연구개발을 실시하게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에 연구비의 중앙관리를 요구하고 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NEDO에서 지원되는 연구비의 원천은 국민의 세금이며, 국민으로 위임받아 연구업무를 실시하기 때문에 연구비 관리와 정산 부문은 매우 중요하게 처리된다. 법적으로는 국가의 보조금 등

에 의해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등 부정한 신청사용 방지, 예산집행의 적정화를 목적으로 하는 내용이 정해져 있어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 연구비를 사용하는 경우 경제성·효율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절한 경리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동시에 경리 처리를 실시한 서류를 가지고 발생한 경비의 타당성을 대외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도 필요로 한다.

특히 대학이 NEDO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았을 경우에는 정확성, 합법성,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의 원칙에 따라 연구비 운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일본에서 국가예산집행에 대해 회계경리를 하도록 감독하는 기관인 ‘회계검사원’의 수검에 미리 대비하고, 회계검사원의 감독에 준하는 수준에서 연구비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대학이 수행하는 연구과정에서 소요된 연구비로 인정되는 것은 연구기간 중에 발생해 연구기간 중에 지불된 경비만 인정된다. 연구기간 외에 발생한 경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NEDO로부터의 위탁기간 중에 발생해 액수가 확정되어 있고, 위탁기간 중에 지불되지 않고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불기한이 연구기간 경과 후 30일 이내의 것에 한해 인정된다.

간접비 성격의 경비의 경우, 연구비는 연구업무에 직접 관계된 경비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인건비 및 기타 사무비용, 위탁기관에 대한 정산과 관련된 비용, 연구기관 외의 연구계획 협의를 위한 경비 등의 항목은 연구비로 인정되지 않고 간접비 성격의 경비 집행으로 본다.

특이 사항으로 대학이 NEDO의 지원을 받은 경우, 연구과제 정산의 적정한 이행을 위해 회식 사절, 식사비의 검사원 자기 부담, 선물 및 교통편 제공 사절 등의 윤리강령을 엄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정된 기간내에서 연구비 관리 결과를 정산 완료해야 한다(곽태완·이승모 2006, 106-108)

3.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의 항목별 변화과정 검토 결과

가. 연구비 관리 규정

앞서 살펴본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 항목의 변화과정을 볼 때 □ 존재 여부에서 세부 규정 확립’ 여부로 체계가 변화되고 알 수 있다. 즉 과거에는 □ 인건비 지급, □ 선금금지급, □ 회비와 회의비 산정, 간접연구비 관리 등에 대한 규정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다면, 2005년 현재 A형 > B형 > C형으로 분류하여, 연구비 지원기관의 규정 이외에도 자체적인 세부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하고 있는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비 관리 규정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세부사항에 대한 규정 및 지침여부를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는가에 평가의 중심을 둘 필요가 있다.

나. 전산화 수준

과거에는 통합전산화 > 부분전산화 > 서류관리 > 수작업관리 등에 대해서 평가하여 왔으며,

2005년부터는 ‘온라인상으로 실시간 사용가능한 통합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가(A형)’ 또는 ‘연구비 관리부서만 사용하는 전산시스템인가(B형)’를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의 정보화 현실에 비춰 볼 때 통합시스템인가, 관리부서용 시스템인가의 여부로서 전산화 수준을 판단하는 것은 의미가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며, 전산시스템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수준의 연구정보체계를 보유·제공하고 있는가의 여부로 평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근거는 본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평가」의 목적은 대학 스스로 보완사항을 파악하고 연구비 중앙관리체제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지, 각 대학의 미흡한 사항에 대해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 인건비 집행

시기별로 수정된 평가항목을 살펴 볼 때 연구책임자에게의 일괄지급 등 문제시 되었던 사항이 폐지되었고, 인건비 집행 항목은 2개 차원으로 분류·시행되고 있다.

첫째, 인건비 집행-1에서는 A형으로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해 원천징수 후 온라인 계좌로 입금하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B형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따라 원천 징수되지만 온라인 송금이 아닌 직접지급이 이뤄지는 유형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C형에서는 연구책임자에게서 원천징수하지 않은 상태로 온라인 또는 직접지급 하는 경우를 포함시키고 있었다. 둘째, 인건비 집행-2에서는 급여지급안내를 시행하고 있는지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기준을 놓고 볼 때 평가지표 구성에 있어 다음 사항을 다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참여율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제15조 제2항에 의해 연구만을 전담하는 교원은 연구에서의 참여율이 10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대학의 장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에서의 참여율이 관리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비의 중앙관리를 위해서는 과제별 계정을 전담기구에서 관리하고 연구비 입금에서부터 최종지출까지를 관리해야 한다. 그러므로 2005년 기준과 같이 연구책임자의 신청에 의거한 원천징수...항목의 의미는 미약하다고 볼 수 있고, 직접계좌이체와 같이 연구비 오·남용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급여지급 안내에 있어서도 사후적인 인건비 지급 통지 보다는 사전적으로 인건비 지급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라. 물건비 집행

기자재 구입과 등록 및 관리 부분은 구매 주체와 구매 절차, 등록, 자산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구체적인 중앙관리 운영 수준을 밝힐 필요가 있다. 특히 2005년의 최종적인 지표를 살펴보면 기자재 등록 및 관리항목에서는 연구종료 후 사후관리·폐기 등과 같이 연구자산에 대한 전주기적인 내용이 존재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도서 구입과 등록 및 관리에 대한 항목 또한 구입-등록-관리에 대해 전담조직으로의 통합화·공동사용화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마. 회계장부 비치 여부

2005년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최근에는 전산회계가 상용화되어 있어 재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된다.

바. 연구비 집행 투명성

2002년까지 세금계산서 사용율 80% 이상 > 60% 이상 > 60% 미만으로 분류하여 평가했으나, 2003년 이후 연구비카드를 포함시켜 오고 있다. 현재는 A유형으로 인건비 지급 또는 물품구매를 위한 계좌이체 등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지출시 법인카드(연구비카드) 집행을 설정하고, 이하 B유형은 일부시행, C유형은 개인카드 집행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구비 카드를 평가항목에 포함시키는 의의는 연구비를 지출함에 있어 오·남용의 가능성을 줄이고, 지출사항을 통제하여 연구비 사용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비 카드, 개인카드와 현금 사용이 혼합될 경우 연구비 지출의 적합성, 공정성, 투명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지출 수단의 비율에 따른 세분화된 차등 배점이 요구된다고 볼 수 있다.

사. 선급금 인정 범위

2005년 현재 사용되지 않으며,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서의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아. 연구비 별도 계정 운영 여부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서는 2005년 현재 사용되지는 않고 있는 항목이다. 다만 교비와 외부연구비의 별도 관리는 원칙화 될 필요가 있다.

자. 결과보고 제출 실적

2005년 현재 사용되지는 않고 있으며, 현행 수탁 연구용역 체제상 본 평가모형에서의 지표로 활용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차. 행정능력

2005년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 항목이며 반영할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카. 연구기간내 연구비 사용율

2005년 현재 사용하지는 않고 있으며, 연구비 중앙관리 제도를 평가하기 위한 항목으로 반영할 필요성은 적다고 볼 수 있다.

다. 간접연구비 집행

과거에는 간접연구비 집행지침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되어 왔으나, 2005년부터 간접연구비 집행 및 관리 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먼저 A유형으로, 매년 수혜 간접연구비 전액을 용도에 맞게 전액 집행을 평가하며, B유형에는 간접연구비 일부는 기금 적립 등으로 집행되는 경우, C유형으로는 연구자 인센티브·관리인원 확충 등 이외의 목적으로 집행되는 경우를 평가하고 있다.

간접연구비는 대학에서 명시적인 규정을 확립하고 용도에 적합하게 운영될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으로, 가장 중요한 항목은 상세한 규정과 지침의 존재 여부에 있고, 이를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준수하며 운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다. 그러므로 현행 간접연구비에 대한 평가항목은 세부적이고 적절하다 볼 수 있으나, 규정·지침 수립 여부와 사용용도 명시 등 제도적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여 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4. 연구비 관리제도의 선행 평가체제 분석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는 과학기술부에서 주관하고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연구된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관리 체도를 분석하고 인증세부지표를 설정하여 산·학·연 기관에 적용하고, 그 결과에 의해 일정수준 이상의 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체연구관리능력을 보유했다면 개별과제별 사후정산이나 연구비 감사 등을 면제하는 제도를 의미한다(과학기술부 2005, 1). 위 연구는 연구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와 연구자의 연구수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이라는 점에서는 본 연구인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평가」와 지향점이 유사하다. 이하에서는 과학기술부(2005; 2006)의 자료를 토대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배경과 주요내용, 평가체제를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의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배경 및 정의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란 산·학·연 연구주체의 연구비관리 시스템을 정밀 평가하고,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정부인증과 함께 연구비 사용실적보고 면제 등이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구비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연구기관의 자율적 연구비 관리능력의 상향표준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즉 연구비 관리체제에 대한 제반 사항을 점검하여 일정요건에 부합하고 연구비가 적절하게 집행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주관연구기관에 대해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유용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려는 제도이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는 우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18731호)」 제11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과학기술부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 면제를 위한 평가기준”을 고시하였고 구체적 추진방안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안전으로 상정하여 의결하였다.

나.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평가분야 및 지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세부인증지표는 우선 평가분야를 크게 3개로 선정하고 있다. 먼저 연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절차가 그것이다. 이러한 3개의 평가분야는 우선 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시스템 및 연구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 중 대표적, 핵심적, 포괄적인 것을 압축하고, 각 분야별로 10여개 내외의 세부인증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평가분야의 선정사유 및 의의를 과학기술부(2005; 2006)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은 연구기관의 연구비관리 및 자체회계검증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비 오·남용 방지를 위해 기관이 자율적으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사전예방적 수단이다. 이러한 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연구기관의 연구비 통제수단 및 행위의 적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인증기준은 다음과 같다. 내부통제시스템의 인증기준은 기관의 연구비 관리 및 자체회계 검증시스템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연구비 통제수단 및 지출행위 적정성 여부를 주로 평가한다. 세부평가지표수는 총 9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 기준배점은 지표별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어 15점 만점 지표 4개, 10점 만점 지표 3개, 5점 만점 지표 2개로 구성되어 있다.

2)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관리 인프라는 연구비를 적절하게 사용·관리할 수 있도록 연구기관의 연구관리 인력 및 제도 등 연구수행을 위한 행정지원적 요소가 일정 수준 이상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분야이다. 이 평가분야를 통해 연구기관의 인적·물적·제도적 연구관리 여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한다.

연구관리 인프라의 인증기준은 연구관리 관련 인적·물적·제도적 연구관리 여건을 종합 평가하고 있다. 세부평가 지표수는 총 9개로 구성되었으며, 중분류는 조직·인력 및 교육훈련, 규정 및 정보활성화, 기관지원 및 연구관리시스템으로 구분되어 있다. 각 지표별 기준배점은 각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어 15점 만점 지표 2개, 10점 만점 지표 7개로 구성되었다.

3) 연구비 집행절차

마지막으로 연구비 집행절차는 실제 연구비가 비목별로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평가분야로서 연구비의 산정·사용 등 실무적인 절차를 의미한다. 연구비 집행절차의 검증을 통해 규정에 맞게 연구비가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연구비관리 인증제도가 형식적으로 흐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즉 3개의 평가분야 중 내부통제시스템 및 연구관리 인프라가 서면평가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실제로 내부통제시스템 및 연구관리 인프라 등이 제대로 구축되어 운영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비 집행절차가 중요한 평가분야로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연구비 집행절차의 인증기준은 실제 연구비의 비목별 기준에 따른 집행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지표수는 총 9개로 구성되었으며, 중분류는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된다. 각 지표별 기준배점은 각 지표의 중요도에 따라 구분되어 15점 만점 지표 4개, 10점 만점 지표 3개, 5점 만점 지표 2개로 구성되었다. 각 비목별로 구성된 평가기준은 규정준수, 증빙유무, 집행절차, 자산관리, 실행여부에 평가의 주안점이 있었다.

<표 1>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평가지표 구성 현황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배점
내부통제 시스템 (9개)	회계·감사통제 (3개)	1. 과제별 별도 구분에 따른 연구비 자금관리와 중앙관리	15
		2. 연구비 통장, 증빙서류 관리	10
		3. 자체감사(일상감사) 운영시스템	15
	집행관리 (3개)	4. R&D 카드시스템 집행관리	15
		5. 연구자에게 연구비 집행시 지적된 사항의 피드백 관리	10
		6. 연구비 적정집행을 사전에 통제하는 시스템 관리	15
	연구관리 절차 (3개)	7. 연구계획서 작성시 연구비 적정성 검토	10
		8. 연구관리 변경사항에 대한 절차	5
		9. 연구종료 시점의 연구비 집행관리의 적정성	5
연구관리 인프라 (9개)	조직·인력 및 교육훈련 (3개)	10. 별도의 연구관리 조직 설치	10
		11. 연구관리 인력의 적정성	10
		12. 교육훈련 참여도 및 자체 교육 실시	10
	규정 및 정보 활성화 (3개)	13. 규정·매뉴얼 내용의 충실도 및 안내	15
		14. 연구책임자 관리비목의 위임전결규정 운영	10
		15. 연구진행 관련 정보안내의 활성화	10
	기관지원 및 연구관리시스템 (3개)	16. 연구관리시스템의 전산화	15
		17. 연구비 관련 자료의 DB화	10
		18. 연구기관의 연구환경 지원 노력	10
연구비 집행절차 (9개)	인건비 (2개)	19. 내부인건비	15
		20. 외부인건비	15
	직접비 (6개)	21. 연구기자재/시설비	15
		22. 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	15
		23. 시작품제작비	5
		24. 여비	10
		25. 기술정보활동비	10
		26. 기타 직접경비/위탁 연구개발비	5
	간접비(1개)	27.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10

자료 : (과학기술부 2006, 8).

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의 검토 결과(시사점 및 적용가능성)

국가연구개발사업은 매년 70,827억원이 투입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다(KISTEP, 2005). 이러한 현실에서 모든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사후정산한다는 것은 이론상 가능할 뿐 세밀한 사업관리 및 사후검증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현실이다. 또한 사후검증은 막대한 인력과 예산 투입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며, 사업시행·사후검증에 2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구조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연구비관리 인증제도」는 연구비관리 문제를 □과제별 사후검증에서 기관별 사전 예방' 차원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부에서는 국가인증제의 형식을 도입하여 산·학·연 기관들이 자체적인 연구비관리와 검증을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볼 때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평가」와 유사한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즉 본 연구에서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평가모형은 '비판을 위한 평가'가 아니라 대학 입장에서 스스로 연구관리체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효율성·투명성을 강화시키기 위함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연구자의 회계업무 등을 경감시켜 연구결과의 질적 향상을 추구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대학이 자체적으로 연구비관리 체제를 객관화·효율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와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 평가」 평가는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연구비관리 인증제도에 대한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평가기준에 대한 대표성·포괄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분류체계에 있어서 연구관리를 위한 대표적 기능을 계층화시키고 있으며, 연구비 관리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평가기준 마련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인력구성교 교육·규정의 매뉴얼화·연구관리 절차에 대한 평가기준 또한 본 연구에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에 비해 몇 가지 지양해야 할 사항은 본 연구 과정을 통해 개선하여 보다 객관적인 평가기준을 모형에 적용하고자 한다.

먼저 용어의 추상성·주관성을 최대한 배제하고 객관성·정량성이 확보된 평가지표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평가기준으로 적정성, 충실성 등 구체적·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지표가 제시되는 경우가 나타남이 그것이다. 또한 존재 유무자체를 배점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부분 또한 평가기준을 보다 세분화하여 계층적 구조로 형성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는 하나의 분류 체계로 평가될 수 있는 항목이 다른 분류 체계에서도 포함되는 문제는 평가모형의 명확성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사항이다. 예를 들면, 선행연구의 대분류 중 내부통제시스템에서는 집행관리가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 대분류에서는 다시 연구비 집행절차가 나타나고 있어 가급적 조정이 요구되는 사항이라 판단됐다.

본 연구에서는 기자재항목의 경우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는 일반기자재와 □도서의 구분이 존재하지 않고 총 15점을 배점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직접비 사용을 통한 연구자산 확보·관리는 연구비 중앙관리에서 중요사항으로 판단하여 각각 구분한 후 관리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간접비는 기존에 학술진흥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에서도 구체적인 기준을 통해 평가되어 왔지만, 선행연구의 경우 지적재산권 출원과 등록비로 그 의미를 제한한 바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 활용과정에서의 자체 규정의 확립 및 준수 여부, 규정 외 집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 밖에 평가과정에서의 오해와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기존 실태조사와 선행연구의 항목간 비교, 지속적인 실무의견 반영에 노력하고자 한다.

5.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체제와의 비교 분석

본 연구와 과학기술부(KISTEP) 평가지표는 연구비 관리의 총괄적 체제에 대해서 평가를 시행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이는 연구비라는 특수목적의 비용처리에 대한 합리성·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어느 분야의 연구라 할지라도 총론적으로는 동일한 지향점을 가지게 될 것이다. 특히 연구비의 관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관리부서의 존재·지침의 존재·지침에 따른 비용 지출·감사를 통한 검증 등 보편적 당위성이 요구되는 사항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본 연구와 과학기술부(KISTEP)의 평가지표에서 유사한 사항이 중복되어 나타나는 것은 특별한 논의가 필요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과학기술부(KISTEP)의 평가지표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사항에 있어서는 본 연구를 통해 개선해 나가야 객관적 평가가 진행될 수 있다고 판단되었다.

대표적으로는, 추상적 용어의 사용과 주관적 판단의 가능성이 있는 항목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다.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연구비 적정 집행을 유도하는...” 등과 같이 추상적·주관적 요소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각 문항에 대한 평가는 일정 배점을 평가자가 구체적인 기준(감점 요인)이 없이 평점할 수 있게 구성되었다는 특징도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존재여부, 실시여부, 실행 수준(등급)등으로 구체적인 관리 수준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체계화하고자 하였으며, 감점 요인이 발생하게 될 때는 각 수준에 맞는 평점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가. 연구비 관리 인프라의 비교(과학기술부 : 내부통제시스템, 연구관리 인프라)

본 평가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결국 연구비 관리의 수준이 어떠한가를 검토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볼 때 과학기술부(KISTEP) 평가지표는 “유기적 수행,” “적정성,” “충실도,” 등 객관적 평가가 어렵고 결국 평가담당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 항목이 존재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객관적·정량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지표를 구성하였고, 피 평가기관의 입장에서는 스스로 연구비관리 수준을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다차원적인 평가항목을 개발하여 연구비 중앙관리의 효율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표 2> 연구비 관리 인프라 분야의 비교

평가지표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KISTEP)
1-1-1. 연구비 관리 전담기구가 존재하는가?	1-1-1. 별도 계정관리에 따른 연구비 자금관리와 중앙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2-1. 연구비 전담관리 조직내에 구매, 회계, 연구 등 담당 기구가 구분되어 있는가?	1-1-2. 연구비통장, 증빙서류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1-3-1. 연구관리 전담기구 인원 현황	1-1-3. 일상감사(자체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3-2. 연구관리 전담기구 직원 1인당 최근 3년간 교외연구 과제 수행 전임교원 평균 인원 현황	1-2-1. R&D 카드시스템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3-3. 연구관리 전담기구 인원 경력 비율	1-2-2. 연구비 집행시 지적된 사항을 주기적으로 연구자에게 피드백하고 있는가?
1-3-4. 연구관리 전담기구 직원 1인당 처리 연구비 현황	1-2-3. 연구비 적정 집행을 유도하는 회계시스템 운영
1-4-1. 연구비 관련 지침이 규정화 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1-3-1. 연구계획서 작성시 내부 심의절차와 연구비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4-2. 각 업무규정이 매뉴얼화 되어있으며, 운영되고 있는가?	1-3-2. 연구관리 변경사항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1-4-3. 연구문서 관리 규정이 존재하며 운영되고 있는가?	1-3-3. 연구 종료 후 잔액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가?
1-4-4.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가?	2-1-1. 연구관리 관련 조직의 별도 설치 및 유기적 수행
1-4-5. 연구윤리와 관련한 지침이 규정화되어 운영 되고 있는가?	2-1-2. 연구관리 관련 인력의 적정성
1-4-6. 연구비 의무신고 규정이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가?	2-2-1. 규정/매뉴얼 내용의 충실도 및 안내
1-5-1. 윤리교육 실시 횟수	2-2-2. 위임전결 규정 운영 실태
1-5-2. 내·외부기관을 통한 직무교육 횟수	2-3-1. 교육훈련 참여도 및 자체 교육 실시
1-5-3. 연구 고객(연구자, 대학원생 연구소 직원 등) 대상 교육 횟수	2-3-2. 연구개발 관련 정보 안내
1-6-1. 자체감사 실시를 위해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는가?	2-3-3. 애로사항 처리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1-6-2.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2-4-1. 통제 및 관리시스템의 수준과 운영 정도
1-6-3. 자체기관과 외부기관의 과제별 회계감사 실시 수준	2-4-2. 연구비 관련 자료의 DB화 수준
	2-4-3. 시설/공간 및 간접 경비 지원

나. 연구비 집행 관리 시스템(KISTEP : 연구비 집행 절차)

둘째, 과학기술부(KISTEP) 평가지표에서 제시한 연구기자재 항목은 그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라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기자재 항목을 일반기자재와 도서로 구분하여 각각의 관리수준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셋째, 간접비 사용에 대한 항목도 과학기술부(KISTEP)의 경우 간접경비/연구개발준비금, 산업재산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에 한정하여 평가의 의미가 제한된 반면, 본 연구에서는 간접비 활용과정에서의 규정 준수 여부와 규정 외 집행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관적 판단 가능성을 배제하였다.

<표 3> 연구비 집행 관리 분야의 비교

평가기준	
한국학술진흥재단	과학기술부(KISTEP)
2-1-1. 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	3-1-1. 내부인건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1-2.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별 운영 여부	3-1-2. 외부인건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1-3. 통합정보시스템의 DB제공 여부	3-2-1. 연구기자재/시설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2-1. 연구 참여율을 규정화하고 있는가?	3-2-2. 재료비/전산처리관리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2-2. 인건비 산정시 연구 참여율이 반영되고 있는가?	3-2-3. 시작품제작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2-3. 인건비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계좌이체 하는가?	3-2-4. 여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2-4.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항상 공개되어 있는가?	3-2-5. 기술정보활동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3-1. 직접비 중 기자재 관련 집행 수준	3-2-6. 기타 직접경비/위탁연구개발비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집행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3-2. 직접비 중 도서 관련 집행 수준	3-3-1. 간접경비/연구개발준비금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3-3. 직접비 중 연구비 집행관리	3-3-2. 산업재산권 (규정준수, 증빙유무, 연구비 집행 여부, 집행체제 작동여부)
2-4-1. 간접비 집행 규정이 존재하는가?	이하 내용 없음
2-4-2. 간접비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는가?	
2-4-3. 간접비 집행 수준	

IV. 연구를 통한 평가체계 및 지표

미국·일본·한국사례 비교를 통하여 보았을 때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방안은 크게 2개의 분야로 구성된다. 2개의 평가분야는 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및 연구 관리능력을 종합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세부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각 평가분야는 150점 만점체제로 배점되어, 2개 분야 합산 총300점 만점을 목표 한다. □연구관리 인프라는 연구비를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와 체제 구축, 인력 및 제도 등 연구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체제가 어느 정도의 수준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평가분야이다. 연구비 집행 관리 시스템은 실제 연구비가 규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게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분야로, 연구비 사용 과정의 투명한 집행절차 구비와 검증을 위한 감사체제의 운영 여부에 중심이 있다.

<표 4> 평가의 구성체계

대분류	중분류
연구관리 인프라 (150점 만점)	① 연구비 관리전담 기구 설치 여부 / ② 연구비 관리 조직 / ③ 연구비 관리 인력 / ④ 연구비 관리 규정 여부 / ⑤ 연구비 관리 교육(여부, 수준) / ⑥ 연구비 관리 감사 체계
연구비 집행 관리 시스템 (150점 만점)	① 연구비 관리 전산화 / ② 인건비 집행 절차 / ③ 직접비 집행 절차 / ④ 간접비 집행 절차

<표 5>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체계 및 지표

평가기준		총 점	평가방법		평가구분	
			서류	방문	정성	정량
연구관리 인프라 (150점 만점)	1-1-1. 연구비 관리 전담기구의 설치 여부	30	○		○	
	1-2-1. 연구비 전담관리 조직에 구매, 회계, 연구 등 담당기구의 구분 여부	20	○		○	
	1-3-1. 연구관리 전담기구 인원 현황	10	○			○
	1-3-2. 연구관리 전담기구 직원1인당 최근3년간 교외연구과제 수행 전임교원 평균인원	10	○			○
	1-3-3. 연구관리 전담기구 인원 경력 비율	10	○			○
	1-3-4. 연구관리 전담기구 직원 1인당 처리 연구비 현황	10	○			○
	1-4-1. 연구비 관련 지침이 규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가?(세부항목별 점수 합산)	20	○		○	
	1-4-2. 각 업무규정이 매뉴얼화 되어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가?	2	○		○	

평가기준		총 점	평가방법		평가구분	
			서류	방문	정성	정량
	1-4-3. 연구문서 관리 규정이 존재하며 운영되고 있는가?	2	○		○	
	1-4-4. 연구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가?	2	○		○	○
	1-4-5. 연구윤리와 관련한 지침이 규정화되어 운영되고 있는가?	2	○		○	
	1-4-6. 연구비 의무신고 규정이 있으며 운영되고 있는가?	2	○		○	○
	1-5-1. 윤리교육 실시 횟수	4	○			○
	1-5-2. 내·외부기관을 통한 직무교육 횟수	3	○			○
	1-5-3. 연구 고객(연구자, 대학원생 연구소 직원 등) 대상교육 횟수	3	○			○
	1-6-1. 자체감사 실시를 위해 독립된 부서가 존재하는가?	5	○		○	
	1-6-2. 정기적인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는가?	5	○		○	
	1-6-3. 자체기관과 외부기관의 과제별 회계감사 실시 수준	10	○		○ (일부)	○ (일부)
연구비집행 관리시스템 (150점 만점)	2-1-1. 통합정보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가?	10	○		○	
	2-1-2.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별 운영 여부	10	○	○	○ (일부)	○ (일부)
	2-1-3. 통합정보시스템의 DB제공 여부	10	○	○	○ (일부)	○ (일부)
	2-2-1. 연구 참여율을 규정화하고 있는가?	5	○		○	
	2-2-2. 인건비 산정시 연구 참여율이 반영되고 있는가?	5	○	○		○
	2-2-3. 인건비 지급은 본인에게 직접 계좌이체하는가?	5	○	○		○
	2-2-4. 인건비 산정 기준은 항상 공개되어 있는가?	5	○	○	○	
	2-3-1. 직접비 중 기자재 관련 집행 수준	30	○	○	○ (일부)	○ (일부)
	2-3-2. 직접비 중 도서 관련 집행 수준	20	○	○	○ (일부)	○ (일부)
	2-3-3. 직접비 중 연구비 집행관리	20	○	○	○ (일부)	○ (일부)
	2-4-1. 간접비 집행 규정이 존재하는가?	10	○	○	○	
	2-4-2. 간접비 사용 용도를 명시하고 있는가?	10	○	○	○	
	2-4-3. 간접비 집행 수준	10	○	○		○

V. 결론 및 시사점

대학 연구개발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가고 그에 따라 연구비 투자가 확대됨에 따라 투자의 확대만큼이나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에 대한 관심과 요구도 높아지게 되었다. 그래서 대학을 포함한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과학기술부에서 ‘연구비관리 인증제도를 시행하여 연구기관의 자체적인 검증·관리 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번과 같이 한국학술진흥재단에서도 합리화·공정화된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노력의 결과 최근 대학들은 연구비 관리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그 구체적인 증거로서 많은 대학들이 이미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과거의 연구비 관리에 비해 진일보한 중요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시스템 설계의 합리성, 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측면에서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이민형(2001b)은 대학 연구비 관리와 관련된 주요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첫째,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목적적합성이 낮음이 지적되고 있다. 이는 연구비 중앙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는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중앙과 부설연구기관 단위의 이원적 관리체제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실질적인 합리성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는 의미이다.

둘째, 교수에 대한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것과 같이 인건비 지출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이 어려운 항목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렇듯 교수에 대한 연구 인건비가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교수가 교육활동에 대한 보수를 전액 지급받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럴 경우 교수들은 연구활동을 교육활동 이외의 부가적인 활동으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교수의 연구능력개발과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셋째, 대학의 간접비 사용 기준도 간접비로 볼 수 없는 참여연구원 인센티브, 정책연구 사업비 등의 항목에 사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간접비를 지원하는 정부와 사용하는 대학 모두 간접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인식이 부족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책임주체의 불명확성이 존재하고 있다. 아직까지 일부에서는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대학교수(책임연구자) 개인의 책임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연구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서는 대학 내부에서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대학교수의 행정 업무 수행한 계성을 인정하고 대학 내 중앙 전담기구 차원에서 실질적 행정지원을 수행할 필요가 제기된다. 그러할 때 교수는 연구의 질적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대학(전담기구)은 효과적인 연구개발 활동 지원에 대한 책임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은 활동주체별 책임부여와 이행이 완전하다고는 볼 수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현실적으로 국내에서 존재하는 문제와 미국·일본의 사례를 비교해 당면한 문제해결을 위한 방안을 종합해 보았을 때, 사실상 대학의 자발적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정부를 포함한 외부의 통제에 따른 제도·체제 변화는 대학마다의 특성이 반영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통제기관으로서도 그 효과를 검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대학이 외부와의 연계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연구 개발 활동 수행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강화시켜 나갈 때 외부 연구비 지원을 수주하기 위한 기반조성도 가능해진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의 해결, 개선의 방향과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 평가방안을 모색하여 대학의 관리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 유관기관과 대학 실무자,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의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팀에서 이론적·현실적 측면에서 조사를 수행하고, 전문가회의·실무자회의를 통해 평가방안과 지표를 수립하였다.

본 연구의 시사점과 연구이후 추진되어야 할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범운영을 통해 현실적합성에서의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본 연구는 전문가회의·실무자회의를 통해 수차례에 걸친 수정·보완의 결과물이지만, 각 대학의 인력·재정 규모의 상이성과 같이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변수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타당성이 인정된 평가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인력(교수직, 행정직)·재정 등으로 대학을 등급화 한 후 표본을 추출(stratified sampling)하고 평가지표를 적용하여 시범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각 지표에 대한 배점 및 척도를 재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각 분야에서의 의견을 경청하여 평가항목의 보완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현재도 각 대학에서는 행정체제에 대한 효율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곳이 많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이러한 개별적 노력이 충분히 포함되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에는 비판을 위한 평가로 발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각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중앙관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이를 제공한 해당 대학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자발적 발전노력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기관, 연구관리 전담기구, 산학연 연구수행기관 등의 의견을 폭 넓게 경청하여 평가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향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셋째, 연구비 중앙관리 우수대학에 대한 인센티브 등 장려대책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는 연구비 집행의 오·남용의 문제, 연구비 집행의 효율성·공정성 저하의 문제 등을 해결하여 결국 대학의 관리시스템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이상적인 목표에는 다수가 공감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실천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에서의 준비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즉 연구비 중앙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노력과 충실한 제도적 보완을 갖춘 기관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적·간접적 인센티브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전자는 금전적 이익이 포함될 수 있고, 후자는 향후 정부 과제 공모시에 해당 기관에 가산점을 주는 방식 등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평가결과에 대한 처리에 있어서, 하위를 차지한 기관에 대해서 불이익을 주는 것 보다는 상위기관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여 전체 대학 기관이 상위에 진입하기 위한 노력을 분발하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의 방향과 일치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평가는 단기적 관점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안목에서 수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의 조직체가 변화해 나가는 것은 단기적 성과에 연연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발전의 가능성에 투자함이 옳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연구 자체의 능률과 생산성은 개개인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좌우될 수 있지만, 그 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는 것은 더 큰 인내와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평가방안은 우리나라 대학에서 관리되는 연구비가 합리적인 체제에서 운용되는데 있어서 기초라 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향후에는 연구 생산성 제고라는 더 큰 목표를 위한 장기적인 노력과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과학기술기획평가원(2002). “과학기술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부(2005). “연구관리인증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시스템 설계연구.” 과학기술부.
- 과학기술부(2006). “연구비관리 인증 시범실시 및 기관별 간접경비 산출연구.” 과학기술부.
- 곽태완·이승모(2006).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비 관리 사례 분석.” 『회계논집』, 제7권 제1호.
- 김종호, 김강민(2007). “공공기관 기능확대와 증복기능해소방안.” 『사회과학연구』, 제33권, 2호.
- 송백훈, 정철(2008). “미국, EU와의 FTA가 우리나라 산업에 미치는 영향분석.” 『사회과학연구』, 제34권, 1호.
- 이민형(2001a). “대학의 연구비 관리시스템 개선방안.” 『과학기술정책』, 제127호.
- 이민형(2001b). “대학의 연구관리시스템.” 『STEPI 연구보고서』.
- 이우택(1999). “사회의 투명성과 회계의 발전을 위한 연구: 회계의 Accountability 기능을 중심으로.” 『회계저널』, 제8권, 제1호.
- 정일환·박상대(1998). “연구비 중앙관리제도의 개선방향 -대학관련 집단의 인식을 중심으로-.” 『고등교육연구』, 제10권, 제1호.
- ASOSAI(1985). “The Tokyo Declaration of Guideline on Public Accountability.” *ASOSAI Proceedings*.
- ASOSAI(1994). “New Delhi Declaration of Guidelines on Promoting Effective Accounting and Adequate Internal Control System in Government.” *ASOSAI Proceedings*.
- Roger, G. Noll(1998). *Challenges to Research Universities*. Brookings Institution Press.

Abstract

A study on activating National R & D policy

- Its Applicability to Comparing universities'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research fund among USA · Japan · Korea Cases -

Jong-ho Kim* · Se-hoon Kim** · Pil-sun Hwang***

Besides the direct support on the universities' research fund, government research fund is indirectly related to strengthen the research capacity of universities through providing equipment for the experiments or research infrastructure project.

The Science Foundation is providing research projects mainly on the fields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Korea Research Foundation does to the fields of humanity and social science.

Therefore universities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transparen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search fund and researchers by the expertise.

The research goal is to modify the evaluation system of centralized management system of universities' research fund for the transparen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research fund less burden of researchers.

■ 논문접수일 : 2009년 3월 5일, 논문심사일 : 2009년 4월 15일, 게재확정일 : 2009년 5월 15일

* Professor, School of Social Science, Kyung Hee University

** Researcher, Seoul Development Institute

*** Researcher, *Economist*, JoongAng Daily